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6.
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2013. 5. 22. 「지하수법」 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·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·징수요율 조정  
: 100분의 5 ⇒ 100분의 3

### 3. 근거법규 :

- 가.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3(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)
- 나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7조 및 제59조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 : 2014. 4. 14. ~ 2014. 5. 7.(의견 없었음)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5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6호까지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)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(전산용1)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,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9조 중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3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영 제44조제3항 별표8”을 “영 제44조제3항 별표 7”로, “의한다.”를

“따른다.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106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4. 6. 3.(화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4. 6. 10.(화)
- 위원회심사 : 2014. 6. 18.(수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3. 5. 22 「지하수법」 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·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·징수요율 조정 : 100분의 5 ⇒ 100분의 3

4. 근거법령

-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3(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7조 및 제59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석기)

- 본 조례안은 2013. 5. 22. 「지하수법」 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
- 제2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에서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을 영 제44조 별표7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면 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사유

- 2011년 4월 4일 「지하수법」 시행령 제44조 일부개정으로 인함

###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2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- ----- 영 제44조제3항별표 7 ----- ----- -----	제2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- ----- 영 제44조 별표 7 ----- ----- -----